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64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2

I. 개요

1.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64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6. 30.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등을 섭취하였으나 영양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어 영양표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기구 및 용기·포장 제외)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 ----- ---- <u>1천만원</u> ----- -----.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 ~ 3.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	

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 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조¹⁾는 식품등²⁾(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함)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³⁾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 표시 대상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현행법 제2조제7호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식품등”이라 약칭함.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영양표시 제도 개요 >

- **(제도 목적)** 영양표시 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자가 가공식품의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표시 대상⁴⁾)** 총 290개 품목 중 일부 식품유형(30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260개 품목)에 대하여 영양표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8년 1월 1일부터 영양표시 대상 260개 전 품목의 영양표시가 의무화**됨.
 - * 영양표시 제외 품목: 영양성분 섭취 목적이 아닌 식품(얼음, 추잉껌 등), ▲ 영양성분 함량이 매우 적은 식품(침출차, 천연향신료, 천일염 등), ▲ 표준화가 어려운 식품(한식메주, 한식된장 등) 등 30개 품목
- **(표시 성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은 **총 9가지***이며, 비타민 A 등과 같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36개)의 경우 추가로 표시할 수 있음
 - * ① 열량 ② 나트륨 ③ 탄수화물 ④ 당류⁵⁾ ⑤ 지방 ⑥ 트랜스지방 ⑦ 포화지방 ⑧ 콜레스테롤 ⑨ 단백질
- **(표시 방법)** 제품에 함유된 해당 영양성분의 ①명칭, ②함량, ③1일 영양성분 기준치⁶⁾에 대한 비율(%)을 일정한 규격의 서식도안에 표시하여야 함
 - 제품에 함유된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이 일정한 기준(1일 영양성분 기준치 등)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저”, “무”, “고”, “함유” 등의 용어와 함께 특정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시위치의 제한은 없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제6호의 경우 해당 영양성분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 ③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영양성분의 명칭
 2. 영양성분의 함량
 3.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일부 발췌)>

1. 표시서식도안의 종류

가. 기본형

1) 총 내용량(1 포장)당

영양정보	
총 내용량당	총 내용량 00g 000kcal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 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100g(ml)당

영양정보	
100g당	총 내용량 00g 100g당 000kcal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 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단위내용량당

영양정보	
1조각당	총 내용량 00g(00g×0조각) 1조각(00g)당 000kcal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도 3]

□ 현행법 제6조7)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4) [참고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5)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함. 다만, 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함.

6) [참고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⁸⁾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개요>

- **(제도 목적)**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함.
- **(표시 대상)**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 즉석섭취식품(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약처고시 제2019-32호) [별표1, 2])**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제3조 관련)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해당 제품형태(예시)
국수	국물형	잔치국수, 칼국수, 쌀국수, 우동, 메밀소바
	비국물형	짜장국수, 비빔국수, 비빔쫄면, 볶음우동, 볶음짬뽕면
냉면	국물형	물냉면
	비국물형	비빔냉면
유탕면류	국물형	국물라면, 짬뽕라면, 튀김우동라면, 카레라면 등 기타 국물라면
	비국물형	짜장라면, 비빔라면, 볶음라면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
	샌드위치	-

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 즉석섭취식품(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제5조 관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울러 같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제14조), 영업정지·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제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제31조)9).

□ 개정안은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중요한 정보이며, 특히 당뇨·고혈압 등 대사질환을 가진 소비자에게는 식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시의 정확성을 높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 17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실제 부과액(최고 450만원)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¹⁰⁾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바 있음¹¹⁾.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양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재위반 업체도 연간 0~1개소에 그쳤으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도 없었음. 또한 현재까지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으로 인한 특정 질환자 관련 피해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음.

1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022842) 복지위 검토보고서

□ 법률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1천만원)과 시행령에 따른 실제 과태료 부과액(최고 450만원)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

1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시행 2020. 4. 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영양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과태료 부과 건수(건)	56	37	25	22	27
최고 부과금액(천원)	1,300	1,600	2,000	1,600	4,000

※ 최근 5년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한 바 없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양표시 재위반 현황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적발업체 수(개소)	56	42	31	30	33
재위반 업체 수(개소)	1	1	-	-	1

※ 최근 5년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재위반 현황 없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현행 제도는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외에도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¹²⁾를 두고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위반 실태, 소비자 피해 가능성 및 현행 제재수준 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4조 및 제16조			
1)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 다)를 하지 않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 **둘째**, 개정안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과태료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제3호¹³⁾는 제13조의2제2항¹⁴⁾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중검토

- 개정안은 실제 영양성분이 표시된 내용과 다른 경우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과태료 상향 조정은 위반의 중대성·고의성 및 사회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특정 질환자 관련 피해 사례가 없고 재위반 업체 수가 거

1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등의 표시·광고가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내용만으로는 해당 표시·광고를 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의 없으며,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도 적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식품산업협회: 신중검토

- (과태료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현행 과태료 부과체계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양성분 표시의 특성) 영양성분은 제조공정, 원료 특성 및 시험결과 등에 따라 일정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강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영양표시 의무 확대) 2026년부터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과태료 상향 조정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법무부: 보완검토

-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개정안은 영양성분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나, 제31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도 함께 상향 조정됨.

- 영양표시 위반과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불응은 위반행위의 성격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른 만큼, 과태료 대상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여 차등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

[시행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년 1월 1일

나.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년 1월 1일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 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
- 다.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라. 당류
- 마. 잼류
- 바. 두부류 또는 묵류
- 사. 식용유지류
- 아. 면류
- 자. 음료류: 다류(액상차, 고형차만 해당한다),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및 기타음료
- 차. 특수영양식품
- 카. 특수의료용도식품
- 타.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및 기타장류
- 파. 조미식품: 식초류(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 하.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 및 조림류
- 거. 농산가공식품류
- 너. 식육가공품류: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
- 더. 알가공품류
- 러. 유가공품류

- 머. 수산가공식품류
- 버.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
- 서. 벌꿀 및 화분가공식품류
- 어. 즉석식품류
- 저. 기타식품류
- 처. 건강기능식품
- 커. 가목부터 처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등

-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 2) 얼음류
- 3) 다류: 침출차
- 4) 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 5)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 6) 식초류: 희석초산
- 7)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 8) 식염
- 9)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한다)
- 10) 주류
- 11) 포장육
- 12)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라.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

【참고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탄수화물	324 g	비타민E	11 mg α -TE	인	700 mg
당류	100 g	비타민K	70 μ g	나트륨	2,000 mg
식이섬유	25 g	비타민C	100 mg	칼륨	3,500 mg
단백질	55 g	비타민B1	1.2 mg	마그네슘	315 mg
지방	54 g	비타민B2	1.4 mg	철분	12 mg
리놀렌산	10 g	나이아신	15 mg NE	아연	8.5 mg
알파-리놀렌산	1.3 g	비타민B6	1.5 mg	구리	0.8 mg
EPA와 DHA의 합	330 mg	엽산	400 μ g DFE	망간	3.0 mg
포화지방	15 g	비타민B12	2.4 μ g	요오드	150 μ g
콜레스테롤	300 mg	판토텐산	5 mg	셀레늄	55 μ g
비타민A	700 μ g RAE	바이오틴	30 μ g	몰리브덴	25 μ g
비타민D	10 μ g	칼슘	700 mg	크롬	30 μ g

비고

1.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만 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

【참고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제1호			
1)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	40	60
3)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 범위를 넘은 경우				
가)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50	100	150
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0	40	60
나.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제2호	100	200	300
다. (생략)				
라.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 제3호	250	375	500